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6.10.08]
(일부개정) 2026.10.08 조례 제2424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여성가족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449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 10. 8>

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파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.

가.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

나.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

2. "결혼이민자 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
나.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

제3조(시장의 책무)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 시행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,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한다. <개정 2026. 10. 8>

제5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10. 8>

1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

2.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,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

3.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, 일자리정보, 직업교육·훈련 제공

4.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사업

5.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양육지원 사업

6. 다문화가족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증진사업

7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

8.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사업
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6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) [본조삭제 2025. 11. 11]

제7조(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)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은 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.

제8조(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. <개정 2025. 11. 11>

1.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

3.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
4. <삭제 2025. 11. 11>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10. 8>

제10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1항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단체로 파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.

2. 최근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관련 분야에서 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.

제11조(권한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(개정 2015. 07. 28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·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위탁대상 요건은 제10조2항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제3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 구성할 수 있다."를 " 구성할 수 있으며, 「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

조례」 제8조에 따라 파주시 다문화가족 정책심의 위원회를 대신 한다."로 한다.

부칙(2015.7.28 조례 제1220호)(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⑦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11조제1항 중 "「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를 "「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이하생략

부칙(2025. 11. 11. 조례 제2319호)(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중 제6조 및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부칙(2026. 10. 8. 조례 제242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